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은행대리업의 도입〉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28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은행대리업 도입의 필요성 검토	3
가. 현행 제도	3
나. 개정 배경 및 취지 검토	6
다. 해외 사례	9
2. 은행대리업의 정의 및 업무 범위	12
가. 은행대리업의 정의	12
나. 은행대리업의 업무 범위	14
3. 은행대리업의 진입 규제	21
가. 금융대리업 진입가능 사업자	23
나. 인가제	25
다. 인가 요건	27
4. 은행대리업의 영업행위 규제	30
5. 은행대리업에 대한 감독체계	37
6. 손해배상책임	3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2. 18.
3. 회 부 일 : 2025. 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은행 지점 축소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위축되고 농어촌지역에 영업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핀테크 업체의 등장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은행 업무의 통합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를 위하여 저비용으로 은행의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대리업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일본은 2002년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되어,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의 경우 약 3,000여개의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중이고, 호주의 경우에도 1995년 도입하여 호주 전역의 80개 이상의 은행이 3,500개 우체국과 제휴하여 은행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은행업 및 은행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은행대리업 도입의 필요성 검토

가. 현행 제도

□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무(이하 ‘고유업무’),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를 운영할 수 있음(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¹⁾.

○ 이 중 고유업무는 ①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이하 ‘예금업무’), ②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이하 ‘대출업무’), ③ 내국환·외국환 업무(이하 ‘환거래업무’)임.

□ 현행법령상 고유업무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또는 중개 등이 허용되어 은행이 아닌 제3자가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1)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이하 생략)

※ 겸영업무 예시: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보험대리업, 신용카드업 등

- 이 중 고유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 은행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금지하고 있음²⁾.

< 위수탁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

업무의 종류	본질적 요소 (위탁 불가)	그 외 (위탁 가능)
예·적금	(1) 예금·적금의 수입 (2)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3)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해지 및 입금·지급 업무	(1)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 조회 등 (2)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 (3)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은행(지방은행 제외) 및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지급 (4) 그 밖에 (1), (2), (3)과 유사한 업무
대출	(1)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 및 어음의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실행	대출잔액증명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환거래	(1)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2) 환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자료: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를 토대로 정리

- 이에 따라 고유업무 중 계좌 개설 및 해지, 대출 심사 및 승인, 대출 계약 체결 및 해지, 환거래 등의 업무는 외부에 위탁할 수 없으며, ATM 또는 우체국 등을 통한 입·출금 및 계좌이체 등은 고유업무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어서 외부 위탁이 가능하므로, 이용자가 은행 영업점 외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은행법」은 업무의 위탁 근거 및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고유업무의 ‘중개’ 및 ‘대리’에**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업무와 대출업무의 중개만 일부 가능하며, 대리는 허용되지 않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규정³⁾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 ‘예금성’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령상 예금성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는 허용되지 않음.
- 다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예금상품을 비교·추천)의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⁴⁾한 결과(2022. 1 1.~) 소비자 편익 제고 효과가 확인되어 2025년 4월 금융위원회는 정식 도입방안을 발표⁵⁾하고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임. 이에 따라 은행 예금업무의 중개는 온라인(비대면) 플랫폼 방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4)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신한은행 등 26개사가 예금상품중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음.

5) 금융위원회,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방안, 2025. 4. 17.

식에 한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중개업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 이와 달리, ‘대출성’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 관련 등록절차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마련되어 있으나, 「업무위탁규정」에 따라 은행 고유업무 관련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의 위탁이 금지되므로 판매의 대리는 사실상 불가하므로, 대출성 금융상품의 판매중개만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음.

< 현행법령상 은행 ‘고유업무’의 제3자 수행 >

고유업무	위탁 (「업무위탁규정」)	중개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대리
예금업무	본질적 업무 외 가능	불가 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예금상품 판매중개서비스 시범 운영	불가
대출업무	본질적 업무 외 가능	(대출상품 판매중개) 가능	불가
환거래업무	본질적 업무 외 가능 (사실상 불가)	불가	불가

나. 개정 배경 및 취지 검토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터넷·모바일뱅킹의 활성화와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은행권의 영업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⁶⁾. 이로 인한 대면 영업채

6) 은행 영업점 수(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추이(개소): (2011년 말) 7,623, (2015년 말) 7,313, (2020년 말) 6,454, (2023년 말) 5,794 . (관계기관 합동,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널의 감소는 대면거래를 선호하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영업점 감소가 두드러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금융접근성을 낮추고, 현금거래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금융당국과 은행은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⁷⁾을 마련하여 영업점 축소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영업점 폐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체점포 등을 통해 은행이 직접 대면거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업무위탁 등 제3자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대면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여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유업무 중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이 금지⁸⁾되는 등의 이유로, 이용자가 제3자를 통해 예·적금의 가입 및 대출 등의 은행 업무를 이용하는 것이 제한적임.

□ 이에 개정안은 은행 고유업무의 대리 및 중개를 업으로 하는 은행대리업을 도입하여 디지털 취약계층과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2025. 3. 28.)

7)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기 이전에 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불가피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한 때에는 금융소비자가 점포폐쇄 이전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함.

8) 하위 법령으로 「은행법」에 따른 고유업무의 본질적 업무를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최근 금융위원회도 동일한 취지로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의 위탁 활성화 방안 (이하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⁹⁾.

□ 은행대리업을 도입하면, 대면거래의 접근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은행 계좌 개설, 입·출금 등 은행 업무를 할 수 있어 이용자에게 원스톱 금융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으며, 비금융회사의 고유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다양한 연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¹⁰⁾¹¹⁾. 또한, 은행간 경쟁 활성화, 은행의 점포 설치 및 운영 비용의 절감 등을 통한 시장효율화도 기대해볼 수 있음.

□ 다만, 금융대리업자의 금융 사고나 불완전 판매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으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은행간 또는 대리업자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대면거래 접근성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대리업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의 관리·

9) 금융위원회는 은행 및 대리업 희망사업자간 사업방식 등 협의(2025. 4. ~ 6.),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25. 7.)하여 시범운영하면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예정임. (관계기관 합동,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2025. 3. 28.)

10) 일본의 JAL 항공사는 SBI스미신넷은행의 대리인으로 항공사 앱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는 손님에게 은행업무인 계좌개설, 대출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은행대리업이 변화시킬 금융산업의 모습은?, 하나Knowledge+ 제26호, 2023. 7. 28.)

11)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은행대리업이 변화시킬 금융산업의 모습은?, 하나Knowledge+ 제26호, 2023. 7. 28.

감독 책임 강화,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 마련,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해외 사례¹²⁾

□ 해외 각국은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고 있으나, 각 국가의 금융 환경에 따라 제도가 조금씩 다르게 발전해 옴.

○ 일본은 일찍이 은행대리점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여 왔으며, 은행대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은행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음.

- 종전의 은행대리점 제도를 은행대리업 제도로 개편하면서 은행대리업의 정의도 은행업무의 ‘대리’만 영위하는 것에서 ‘중개’까지 확대하였고, 전업주의를 폐지하여 은행대리업자가 은행대리업 외의 업무도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겸업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은행의 100% 자회사만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그 외 일반사업자도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전에 금지되던 은행대리업의 재위탁도 가능해졌음¹³⁾.

12)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은행대리업이 변화시킬 금융산업의 모습은?, 하나Knowledge+ 제26호, 2023. 7. 28. 및 고동원, 은행대리업(Bank Agency)제도와 규제법적 쟁점, 한국금융연구원, 2023. 11. 을 토대로 작성

13) 【참고자료】 일본의 은행대리업 허용 사례 참조

- 호주는 1995년부터 Bank@Post 서비스를 도입하여 은행이 없는 지역에서 우체국이 은행 업무를 대리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 전역의 3,500개 우체국은 시중은행 80개 이상과 대리인 계약을 체결하였음.
- 미국은 은행대리업 제도가 있지는 않으나 은행이 비금융회사와 제휴를 체결하여 결제, 청산, 지불과 같은 은행의 중요한 기능(critical activities)을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규제 당국은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기능 내재화(임베디드뱅크)가 보편화되자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은행의 제3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강화하였음.
- 그 외, 은행 인프라가 취약한 케냐,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은 은행대리인을 활용하여 예금인출, 계좌개설, 대출 등의 은행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각 국가의 금융정책 및 환경에 따라 대리인 유형은 조금씩 다르며, 일부 국가는 대리인 리스크를 감안하여 라이선스를 가진 금융기관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하고 있음.

<각국의 은행업무 대리 위탁제도 비교 >

구분	일본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케냐
유형	은행대리점	제휴 위탁	제휴 위탁	은행대리점	은행대리점	은행대리점
도입 년도	2005년	-	-	2012년	2013년	2010년
관련 법규	Banking Act	Third-Party Relationship: Risk management Guidance	Agent banking arrangements - Threshold transaction report (TTR) obligations	Malaysia Guidelines on Agent Banking	Guidelines on Agent Banking for the Banks	GUIDELINE ON AGENT BANKING - CBK/PG/15
대리인 유형	금융기관, 법인, 개인	제한 없음	우체국	비즈니스 라이선스 보유한 기관	MFIs, NGO, 우체국, 회사법 규정받는 기업, 지방정부기관, 개인 등	소매상점
대리인 업무	은행의 본질 업무(계좌개설, 대출, 외환)를 포함, 제한 없음	위탁받은 업무만 수행 가능	계좌입금, 연금인출, 청구서 지불	계좌입금·인출, 송금, 대출 상환, 공과금 납부 등	계좌입금·인출, 해외 송금, 소액대출, 공과금납부 등	계좌입금·인출, 송금, 대출상환, 퇴직금, 공과금, 모바일폰뱅킹 서비스 등
특징	은행이 대리업자 지도·감독의무 (업무지도, 적절한 여신심사, 손님정보보호 등)	법적책임은 은행에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 시 실사 및 지속관리 감독 의무	개인/기업 손님은 은행 카드, 통장 등을 가지고 우체국 방문하면 기본적인 은행 거래 가능	계좌 개설, 환전, 카드발급, 대출심사는 금지/은행은 대리인에 대한 Know-Your-Agent 수행	대리인이 손님에게 직접 비용 청구는 금지되며 은행이 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	대리인의 신용도에 따라 한도 구조를 다르게 설정, 대리인은 손님에 수수료 수취금지

자료: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은행대리업이 변화시킬 금융산업의 모습은?, 하나Knowledge+ 제26호, 2023. 7. 28.

2. 은행대리업의 정의 및 업무 범위

가. 은행대리업의 정의

- 개정안은 은행을 위하여 은행의 업무를 대리·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은행대리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경영하는 자를 ‘은행대리업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의2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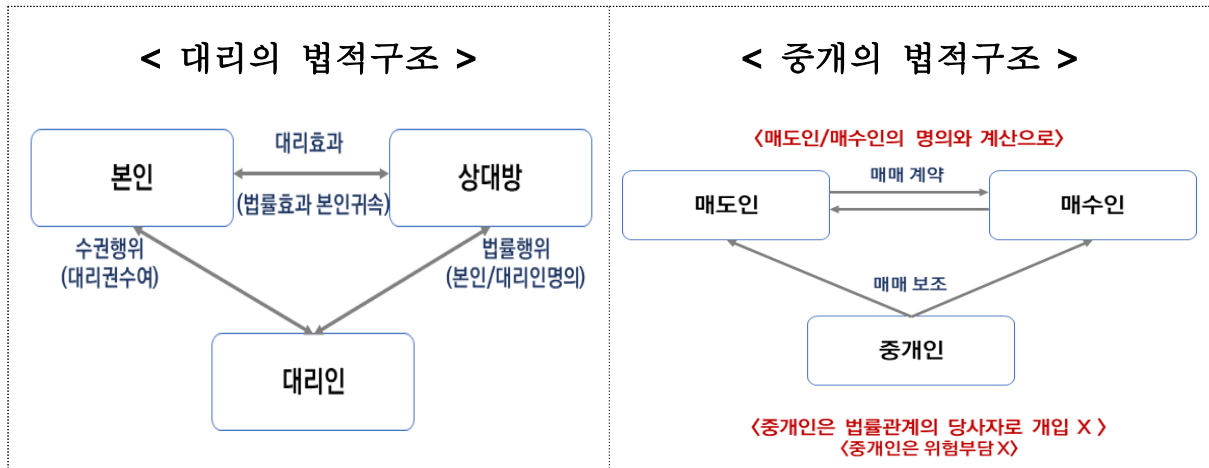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u><신설></u> 3. ~ 10. (생략) ② (생략)	제2조(정의) ①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은행대리업”이란 은행을 위하여 은행의 업무를 대리·중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u> 2. (현행과 같음) <u>2의2. “은행대리업자”란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u> 3.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일본의 사례와 같이 은행대리업에 은행업무의 ‘대리’ 뿐 아니라 ‘중개’도 포함하고 있음.

- ‘대리’는 대리인(은행대리업자)이 본인(은행)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받아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은행)에게 귀속시키는 법률행위로, 대리인(은행대리업

자)에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존재하는 반면, ‘중개’는 본인(은행)과 제3자(소비자)간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인에게서는 계약 체결 권한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음¹⁴⁾.

< 대리와 중개의 개념 비교 >



자료: 관계기관 합동,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2025. 3. 28.

□ 이와 관련하여서는, 고유업무의 ‘대리’ 및 ‘중개’를 「은행법」에서 은행대리업으로 함께 규율할 것인지, 「은행법」(대리)과 「금융소비자보호법」(중개)에서 각각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리’와 ‘중개’가 다른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각각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대출성 금융상품의 판매 중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려는 경우 은행업무의 ‘중개’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대리업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14) 관계기관 합동,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2025. 3. 28.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매매 보조라는 단순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한 ‘중개’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으로 규율하고, 고유업무 관련 본질적 요소의 위탁에 해당하는 ‘대리’만 「은행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그 외에,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은 금융상품의 판매 ‘중개’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과 시행령은 ‘중개’ 뿐 아니라 ‘대리’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개정을 통해 ‘대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대리업 도입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법」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논의할 필요가 있음.

나. 은행대리업자의 업무 범위

□ 개정안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업무의 대리 또는 중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대리업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며, 은행대리업자가 은행의 허락을 받아 은행대리업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3조의8(업무범위 등) ① 은행대리업자는 은행업무의 대리 또는 중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대리업자는 은행대리업무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운영할 수 없다. ③ 은행대리업자는 은행의 허락을 받아 은행대리업을 재위탁할 수 있다.

□ 안 제43조의8 각 항별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개정안(제1항)은 은행의 모든 고유업무(예금업무, 대출업무, 환거래업무)에 대해 대리 또는 중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에서는 고유업무 중 비본질적 요소(상담, 서류 접수 등)는 제한없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하되,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는 일부만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즉, 예금업무, 대출업무 및 환거래업무의 심사 및 승인 등은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의 체결 및 해지(입금 및 지급 포함)만 위탁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¹⁵⁾.

15) 이 경우, 하위 법령으로 대리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위임할 필요가 있음. 다만, 법률에서 대리가 불가능한 업무를 명시하여 한정적 위임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에 따른 ‘대리 가능한 업무’ 범위 >

구 분		대리 불가능한 업무	대리 가능한 업무
본질적 요소	예·적금	심사 및 승인	계약 체결 및 해지, 입금 및 지급
	대출	심사 및 승인, 실행	계약 체결 및 해지
	환거래	심사 및 승인	계약 체결 및 해지
비본질적 요소 (상담 및 서류접수 등)		없음	모두 가능

자료: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재작성

○ 따라서 은행대리업자가 대출 심사 및 승인 등을 포함하는 모든 고유업무를 대리 또는 중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 중 고유업무를의 대면 수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만 대리 또는 중개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은행대리업 도입의 주요 목적이 대면거래의 접근성 제고인 점, 대출의 심사 및 승인 등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둘째, 개정안(제2항)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대리업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수정된 전업주의(제한된 겸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¹⁶⁾.

16)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개정안이 예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문언상 은행대리업자가 은행대리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된 전업주의(제한된 겸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은행대리업자에 대해 겸업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업주의와 겸업주의의 장·단점과 우리나라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 은행대리업자가 은행대리업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업주의를 채택할 경우 전문성 강화, 규제 준수 및 리스크 관리 용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은행대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참고로, 일본은 당초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은행대리업이 활성화되지 않자, 2005년 「은행법」을 개정하여 전업주의를 폐지하고 은행대리업 및 그 부수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¹⁷⁾.
- 반대로, 은행대리업자가 은행대리업 외에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겸업주의를 채택할 경우, 은행대리업의 활성화 및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해상충의 문제, 관리의 복잡성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대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겸업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겸업 허용 여부를 논의할 때에는 은행대리업의 진입규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에서와 같이 은

17) 다만,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고동원, 은행대리업(Bank Agency)제도와 규제법적 쟁점, 한국금융연구원, 2023. 11.)

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및 우체국 등에 대해서만 은행대리업을 허용할 경우에는 검업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임.

□ 셋째, 개정안(제3항)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의 허락을 받아 은행대리업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위탁을 허용할 경우, 더 많은 지역과 다양한 채널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금융 소외 계층의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수 있는 반면, 재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서비스 품질 저하, 금융사고 등)의 책임 소재가 더욱 불명확해질 수 있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음¹⁸⁾.

○ 또한, 개정안에 따른 은행대리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해당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으므로¹⁹⁾ 개정안에 따른 은행대리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은행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18) 참고로, 일본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의 허락을 얻어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고동원, 은행대리업(Bank Agency)제도와 규제법적 쟁점, 한국금융연구원, 2023. 11.)

19)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급부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넷째, 인터넷은행의 업무를 은행대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터넷은행의 경우,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²⁰⁾, 개정안에 따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도 대리 또는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은행대리업의 도입의 주요 목적이 대면거래의 편의성 제고인 점을 고려할 때, 대면업무가 허용되지 않는 인터넷은행업무에 대해서는 대면업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리업을 허용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보임²¹⁾. 다만, 은행권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진

2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및 「은행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적용할 때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2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제16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해당 영업의 내용, 방식,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① 법 제16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종사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여营业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어려운 경우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측면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업무도 대리 또는 중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있음.

-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은행업무의 대리는 대면으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나.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위한 정보통신기기의 분실 및 고장 등 기술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속, 유증(遺贈), 담보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외의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상 또는 기술상 제약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어렵거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은행대리업의 진입 규제

- 개정안은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대리업 경영시 인가요건인 최저자본금을 유지하도록 함. 다만, 은행, 상호저축은행,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체신관서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안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7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장의2 은행대리업
<신설>	제43조의5(은행대리업의 인가) ①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대리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일 것 2. 은행대리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은행대리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은행대리업자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대리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	행	개	정	안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 설>		제43조의6(금융기관의 은행대리업 등록 ²²⁾)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제43조의5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은행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7.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신 설>		제43조의7(최저자본금) 은행대리업자는 제43조의5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대리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6조(벌칙) ① (생 략)		제6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		
<신 설>		2. 제43조의5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는 자		
제68조(벌칙) ①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		제68조(벌칙) ① 은행(은행대리업자를 포함한다)의 임원-----		

현행	개정안
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8. (생략)	----- ----- -----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43조의7을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u> 6. ~ 8. (현행과 같음)

가. 금융대리업 진입가능 사업자

- ☐ 개정안은 금융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 법인 외에 비금융법인 뿐 아니라 개인도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 이와 관련하여 ‘위탁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진입가능 사업자를 ① 은행, ②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 ③ 타 금융권(우체국 포함)으로 한정할 계획이며,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편의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도 은행대리업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은행대리업 도입 및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검토할 예정임.

22) 등록이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갖추어둔 장부에 등재함으로써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함(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등록제를 운영함.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할 은행대리업의 진입가능 사업자도 은행,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우체국으로 한정할 계획임²³⁾.

□ 이와 관련하여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 운영 리스크 및 금융시장 안정, 「은행법」상 법인이 아니면 은행업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²⁴⁾ 등을 고려하여 진입가능 사업자의 범위에서 개인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금융법인 외에 비금융법인(편의점, 대형마트 등)으로까지 진입가능 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은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를 결합한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으며²⁵⁾, 은행대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²⁶⁾인 측면이 있음.

○ 반면, 비금융법인은 여·수신 등의 업무 수행 경험이 없어 전문성 부

23)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계획

－ 은행 및 대리업 희망사업자 간 사업방식 등 협의(2025. 4. ~ 6.)

－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25. 7.)

(관계기관 합동,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2025. 3. 28.)

24) 「은행법」

제4조(법인) 법인이 아니면 은행업을 경영할 수 없다.

25) 일본의 경우, 은행이 유통, 통신 등 비금융회사를 은행대리점으로 두어 이종산업 결합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예를 들어, 건설업체 오픈하우스 자회사 Ouchi Link는 SBI스미신넷 은행의 대리점으로 SBI스미신넷은행이 제공하는 NEOBANK(SB스미신넷에서 은행대리점 계약을 맺은 비금융회사)에 맞추어 은행 업무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기반 금융서비스를 활용하여 주택 구입에 필요한 금융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은행대리업이 변화시킬 금융산업의 모습은?, 하나 Knowledge+ 제26호, 2023. 7. 28.)

26) 과거 일본은 은행의 100% 자회사만 법인대리점이 될 수 은행대리점 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업하는 것이 금지되어서 일반사업회사가 은행대리점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음. 그러나 은행대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5년 은행법을 개정하여 일반사업자도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은행대리업자가 은행대리업 이외의 업무도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고동원, 은행대리업(Bank Agency)제도와 규제법적 쟁점, 한국금융연구원, 2023. 11.]

족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금융법인에 비해 높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은행대리업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대면거래 접근성 확대 효과 및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인한 영향 등을 보아가며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는 데에는 적절할 수 있음²⁷⁾.

나. 인가제

□ 개정안은 은행대리업의 인가제를 원칙으로 하되,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이원적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진입가능 사업자 및 인가제 및 인가 의제 적용 >

구 분		개 정 안	정부 의견
법인	금융 법인	신고로 인가 의제	인가 대상 ※ 은행만 신고로 인가 의제
	비금융 법인	인가 대상	(추후 검토)
개인		인가 대상	불가

자료: 정부의견은 활성화방안 및 정부의견을 취합하여 정리한 것임

□ 은행대리업을 인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은행대리업이 인가대상인 은행의 업무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고유업무에 대한 대리나 중개를 수

27) 일본은 2005년 이후 은행대리업의 활성화를 위해 비금융법인에 대해서도 금융대리업을 허용하고 있음.

행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개별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체신관서의 경우는 개별법에 따라 은행업무를 이미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고만으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²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²⁹⁾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업권 사이의 형평성 측면에서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음³⁰⁾.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인가제 및 신고를 통한 인가제 의제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은 ‘은행’으로 한정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은 제도 운영 상황을 보아가며 의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가제 의제 적용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28)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판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생략)

2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의 등록) 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1.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이하 생략)

30) 고동원, 은행대리업(Bank Agency)제도와 규제법적 쟁점, 한국금융연구원, 2023. 11.

다. 인가 요건

- 개정안은 인가 요건으로 최저자본금, 자금 조달방안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분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첫째, 「은행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인가 또는 등록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의 자격 요건(금소법, 미성년자, 금융관계법령 위반 이력자 임원 제외 등)이나 대주주 자격 요건(동일인 주식보유한도,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등을 은행대리업의 인가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은 은행대리업의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대리업에 대해서 최저자본금을 도입하는 것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타당하나, 최저자본금 수준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최저자본금을 두는 주요 목적과 타 업권의 최저자본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최저자본금이 높은 경우 안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진입규제로 인해 은행대리업을 활성화하기 어렵고, 반대로 최저자본금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는, 은행대리업자가 난립하여 소비자 보호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업종별로 최저자본금 요건을 두는 주요 목적과 수준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대량의 예금 취급 및 신용창출 기능으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유지를 위해, 예상 손실을 흡수하고 대출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을 두고 있으므로 엄격한 자본 요건을 요구하는 반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영업지속성과 분쟁 조정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저자본금을 두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재무안정성 확보 차원 수준의 자본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³¹⁾.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자본금 요건을 500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은 지방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 요건이 250억원인 것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은행대리업자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등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요건(5억원 이상)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업무별로 최저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은 5억원 이상, 금융상품자문업은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1억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³²⁾.

31) 은행대리업자의 경우, 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소비자 피해 보상 측면에서 최저자본금 요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3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은 최저자본금 요건 없음

□ 그 외에, 최저자본금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이를 제재하는 것은 최저자본금 요건을 둔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최저자본금 유지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은행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자본금을 두는 이유의 차별성,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른 제재(등록 취소) 등을 고려하여 제재 유형 및 수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은행대리업 영업행위규제

- 개정안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대리업 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행위규제를 신설하고 있음(안 제43조의9부터 제43조의12까지, 제43조의14 및 제43조의1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3조의9(대리·중개업무의 표시) 은행대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을 위하여 업무를 대리·중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43조의10(유사상호 사용 금지) 은행대리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대리 또는 은행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대리업무 또는 은행중개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제43조의11(서류의 작성·보존 의무) ① 은행대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대리업과 관련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은행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은행대리업무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보존기간, 보존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43조의12(이용자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① 은행대리업자는 이용자의 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은행대리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이용자의 재산

현행	개정안
<u><신 설></u> 을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이용자의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제43조의14(경영공시) 은행대리업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43조의15(준용규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제3항은 은행대리업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은 “은행대리업자”로, “은행업”은 “은행대리업”으로 본다.	을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이용자의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14(경영공시) 은행대리업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의15(준용규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제3항은 은행대리업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은 “은행대리업자”로, “은행업”은 “은행대리업”으로 본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의4. (생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7의5. (생략) 8. ~ 11.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	제69조(과태료) ① ----- -----. 1. ~ 7의4. (현행과 같음) 7의5. 제43조의10을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7의6. 제43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재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은행대리업자 7의7. 제43조의14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대리업자 7의8. 제43조의15에서 준용하는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대리업자 7의9. (현행 제7호의5와 같음) 8. ~ 11. (현행과 같음) ② ----- -----

현행	개정안
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u><신설></u> ③ (생략) 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 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⑥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3. 제43조의15에서 준용하는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대리업자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 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 2. 제43조의9를 위반하여 대리·중개 업무를 표시하지 아니한 은행대리업자 3. 제43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존 의무를 게을리 한 은행대리업자 ⑤ · ⑥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대리업을 영위하면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행위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은행대리업자 영업행위규제 관련 개정안 요약 >

개정안 조제목	내용 및 취지	위반시 처벌
대리·중개업무의 표시 (안 제43조의9)	(내용) 은행대리업자가 은행을 위하여 업무를 대리·중개한다는 사실의 표시 의무화 (취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의 지점이라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은행대리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유사상호 사용 금지 (안 제43조의10)	(내용) 은행대리업자 이외의 자는 유사상호 사용 금지 (취지) 고객이 (무권한) 대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은행법」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1억원 이하 과태료 ※ 「은행법」 제14조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서류의 작성·보존 의무 (안 제43조의11)	(내용) 은행대리업자가 은행대리업 관련 서류 작성 및 보존, 은행이 은행대리업자에게 은행대리업 관련 서류 열람 및 설명 요구 가능 (취지) 은행이 은행대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안 제43조의12)	(내용) 은행대리업자는 이용자의 재산과 자신의 고유재산 구분 관리 의무 (취지) 은행대리업자가 이용자의 금전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고객자산을 보호	1억원 이하 과태료
경영공시 (안 제43조의14)	(내용) 이용자 보호 위해 필요한 사항 공시 의무화 (취지) 은행대리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의 알권리 충족, 금융당국 등의 감독 지원 ※ 「은행법」 제43조의3(경영공시)	1억원 이하 과태료 ※ 「은행법」 제43조의3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준용 규정 (안 제43조의15)	(법제34조①) 경영의 건전성 확보 의무	-
	(법제34조의2)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①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 제공 ②조세포탈 등 부당한 거래 지원 ③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 ④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	1억원 이하 과태료 ※ 「은행법」 제34조의2①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법제34조의3③)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 금융위 보고 및 공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은행법」 제34조의3③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첫째, 은행대리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에 해당³³⁾하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정³⁴⁾이 적용되므로, 은행대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안 제43조의9(대리·중개업무의 표시)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³⁵⁾과 유사한데,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이 더 상세하다는 점에서, 금융대리업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정과 달리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3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정의)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34) 제17조(적합성원칙), 제18조(적정성원칙), 제19조(설명 의무),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21조(부당 권유행위 금지),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등

35)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지 여부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개정안은 안 제43조의9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위반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은행에 적용되는 규정을 은행대리업에도 마련하거나 준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과 은행대리업의 차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안 제43조의10(유사상호 사용 금지)는 은행대리업자 외의 자가 은행 대리 또는 은행중개 등의 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이 권한이 없는 대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은행이 아닌 자가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은행법」 제14조³⁶⁾와 동일한 취지임.

- 그런데 개정안은 안 제43조의10(유사상호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은행법」 제14조를 위반한 것과 동일하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은행대리’ 문자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은행’ 문자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6) 「은행법」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또한, 안 제43조의14(경영공시)는 은행대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은행대리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는 경영공시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데, 그 중 은행대리업자에 대해서만 경영공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대리업자가 은행의 업무를 대리 또는 중개하므로 보다 강화된 의무가 부과될 필요성이 있음³⁷⁾.

- 한편, 은행대리업자의 경우 은행의 한정된 업무만을 중개하는 역할로, 자산·부채 관리 또는 대규모 자금조달이 없어 재무적 투명성 공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영공시보다는 영업행위규제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점, 은행대리업자가 은행대리업을 영위하면서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점(안 제43조의16)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7) 경영공시에는 대체로 조직 및 인력, 자본구조, 경영방향 등의 일반 현황과 경영실적 및 재무 현황, 리스크 관리 및 유동성 등의 내용이 포함됨.

5. 은행대리업에 대한 감독체계

- 개정안은 은행이 은행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대리업자가 업무를 재위탁한 경우 수탁자에 대해 업무 지도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안 제43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3조의13(업무 지도·감독) ① 은행은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은행대리업자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한 업무의 지도 및 그 밖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은행에 부여하고, 재위탁 시 수탁자에 대한 지도·조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위탁자-수탁자 간 계층적 관리·감독 구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감독 당국이 직접 은행대리업자(수탁자)에 대해 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은행대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대리·중개업무의 표시, 이용자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등)를 위반하여 금융당국이 은행대리업자에게 제재를 부과하려는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은행대리업자를 감독·검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현행 「은행법」은 은행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권한을 규정³⁸⁾하고 있으므로, 금융당국이 은행대리업자에 대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거나 현행법 규정(제44조, 제48조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8) 은행법」

제44조(은행의 감독)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그 밖의 관계 법률, 금융위원회의 규정·명령 및 지시에 대한 은행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48조(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6. 손해배상책임

- 개정안은 은행대리업자(수탁자 포함)가 은행대리업을 영위하면서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은행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되,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3조의1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조의16(손해배상책임) 은행은 은행대리업자(은행대리업자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은행대리업을 영위하면서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안은 은행대리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은행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금융소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은행대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일반적으로, 본인-대리인 관계인 경우 「민법」 제756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대리인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³⁹⁾,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이 개별법에서 이를 별도로 명시한 입법례도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39)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게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음⁴⁰⁾.

□ 다만, 유사입법례에 따라, 안 제43조의16에 따른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은행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보완하여 본인(은행)의 책임과 대리인(은행대리업자)에 대한 구상권이 별개의 법적 권리임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에 대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

4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에 대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일본의 은행대리업 허용 사례

- ☐ **(정의)** 은행을 위해 은행의 본업인 ❶예금·적금 수입, ❷대출·어음할인, ❸환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대리 또는 중개
- ☐ **(진입규제)** 결제시스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은행대리업 허가**(허가제)
 - 은행대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적 기초**를 가진 자*
 - * 자본금: 개인 3백만엔, 법인 5백만엔
 - **인적 구성** 등에 비추어 은행대리업을 공정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가진 자
 - 다른 업무를 겸영하여 은행대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는데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자***
 - * '02년 은행대리업 도입 시 전업의무를 부과하였으나 '05년 법개정으로 전업의무를 폐지하고 겸영업무에 대한 개별승인제로 변경
- ☐ **(은행대리업자 의무)**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종 의무 및 금지행위 등 명시*
 - * ① 고객에 대해 소속은행 상호, 대리행위 명시 및 계약 관련 정보제공
 - ② 허위정보 고지, 오인행위, 끼워 팔기, 소속은행 고객과의 차별 등 금지
 - ③ 재산의 구분관리
- ☐ **(소속은행 의무)**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업무지도, 건전한 운영 확보** 및 은행대리업자가 고객에게 끼친 **손해배상 책임**
- ☐ **(감독)**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위해 **보고요구, 검사, 업무개선명령 및 허가의 취소·정지 명령** 가능
- ☐ **(예외)**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업을 하는자(신용금고 등)은 허가 없이 은행대리업 운영 가능

< 일본 은행의 은행대리업 운영 사례 >

- ❶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은 3,000여개의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 중
- ❷ 다이와증권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다이와넥스트은행)을 설립하고 증권 지점에서 은행대리업무 수행

관계기관 합동,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2025. 3. 28.

문 의 처

02)6788-5104
